##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9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인영・이기헌・박홍배

박상혁 • 한정애 • 이정문

강준현 • 전진숙 • 김영진

백승아 • 이연희 • 김성회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 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 ④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
	체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
	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2조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
	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
	<u>여야 한다.</u>